

[취득학점 포기제도 관련 근거규정]

학사운영 규정

제51조(취득학점의 포기) ① 취득한 학점은 포기할 수 없다. 다만, 교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6학점까지 취득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해당 교과목에 대해서는 'W'(Withdraw)로 표기하며, 평점평균에 반영하지 아니한다.

② 취득학점 포기를 위해서는 등록학기 7회 이상, 102학점(제57조 제2항이 정하는 대학(학부)·학과(부)의 경우 106학점) 이상 취득한 학생으로서 소정의 기간에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취득학점 포기원은 1회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, 포기를 철회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.

④ 이수중인 교과목은 취득학점 포기를 할 수 없다.

⑤ 취득학점을 포기한 교과목은 재수강을 할 수 없다.

부칙

제4조(취득학점의 포기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제51조는 2014학년도 1학기 이후 이수한 교과목부터 적용한다.

② 2014학년도 제1학기 전에 취득한 학점은 6학점까지 포기할 수 있으며, 신청대상,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등록학기 7회 이상, 102학점(106학점)이상 취득한 학생일 것

2. 소정의 기간에 포기원을 제출할 것

③ 제2항 제1호의 취득학점 포기원은 1회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, 포기를 철회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.

④ 제2항에 따라 취득학점을 포기한 교과목은 재수강을 할 수 없다.